##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03

발의연월일: 2024. 12. 2.

발 의 자:서미화·김예지·김남근

소병훈 · 김영환 · 권칠승

전현희 · 김종민 · 윤종군

김병기 · 이용선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를 위한 시스템(건축행정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고, 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의 건축물 관련 시설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전산자료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행정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시설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의 낭비로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며 정책의 품질 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의 건축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심사 및 승인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행정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장애인의 건축 물 이용 편의 증진 정책에 폭넓게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4항).

법률 제 호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중 "건축물의 소유자가 본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하거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 인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건축물의 소유자가 본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하는 경우
- 2.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하는 경우
-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의 건축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
처리 등) ① ~ ③ (생 략)	처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
	<u> </u>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	4
고 <u>건축물의 소유자가 본인 소</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유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	<u> 해당하는</u>
를 신청하거나 건축물의 소유	
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	
<u>상속인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u>	
<u>정보를 신청하는</u> 경우에는 승	
인 및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u> &lt;신 설&gt;</u>	1. 건축물의 소유자가 본인 소
	유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
	<u>보를 신청하는 경우</u>
<u>&lt;신 설&gt;</u>	2.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건축
	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
	<u>하는 경우</u>
<u>&lt;신 설&gt;</u>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
	인등의 건축물 이용 편의 증

	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
	<u>청하는 경우</u>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